

## 서울특별시 서초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의안	36
번호	

○ 1995. 12. 21.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 제안이유

-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구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함.

#### 2. 감사기간

- '95. 11. 28 (화) ~ 12. 4(월) 7일간

### 3.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 감사위원장 : 안 용 준 총무재무 위원장
- 동사무소 감사반 구성

감사반	수 감 기 관	감 사 위 원 (무순)	감사보조자
제1반	서초1동, 서초2동	안용준 위원, 최정규 위원, 김열호 위원, 도인수 위원	전문위원 임종민
제2반	반포본동, 방배본동	임한출 위원, 현영 위원, 이룡우 위원, 권금택 위원	직원 안주순
제3반	양재2동, 서초3동	유원규 위원, 천승수 위원, 허원 위원, 정순임 위원	직원 백정완

- 감사대상 :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없음

### 4. 감사장소

- 전체회의 (개회, 강평) : 기획상황실 (5층)
- 위원회식 감사 : 기획상황실 (5층)
- 현장답사 : 필요시 대상 선정
- 18 개동 : 동장실

### 5. 감사 착안사항

- 가. 행정사무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 나. 조직운영의 합리성
- 다.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 라. 경비의 경제성
- 마. 사업의 타당성
- 바. 업무의 능률성
- 사. 기타 부실요인

##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가. 집계표

부 서 별	계	건 의	개 선	시 정	처리요구
계	116	31	29	49	7
공 통	12	3	2	7	
3 실	13	4	4	5	
총 무 국	28	7	10	10	1
재 무 국	19	2	7	7	3
시 민 국	30	7	3	17	3
동 사 무 소	14	8	3	3	

## 나. 처리의견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공 통	시 정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적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보고가 없고, 그 시정 개선이나 구정업무 반영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도인수 위원)
	시 정	의회 개원전에 지침·훈령으로 구성, 운영중인 각종 협의회, 심의회, 위원회 등에 대하여 그 취지와 목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야 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유원규 위원)
	시 정	자치화시대를 맞아 업무의 민간대행 내지 위탁관리가 증대되고 있으나 개별적, 구체적 근거가 없어 적정한 지도감독 등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임한종 위원)
	건 의	지방화, 자율화 시대의 경영적 자치행정을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 규칙 및 조례를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일제히 검토, 정비하여 새시대 행정환경 여건과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의함. (현 영 위원)
	개 선	각종 공사와 사업은 투자심사와 관련부서 협의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거친으로써 중복투자와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의 연동화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허 원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공 통	개 선	<p>예산배정계획(기획예산과), 세입징수계획(세무관리과) 및 지출 계획(재무과) 이 계획과 실적이 맞지 않으므로 상호 연계시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p> <p>(김열호 위원)</p>
	시 정	<p>경영행정이란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나 실천은 미약한데,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업무위임을 받을때는 업무·인력·예산을 동시에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구정업무를 전면 재검토·분석하여 위임사무의 경우, 보조금을 규정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철저히 할 것</p> <p>(도인수 위원)</p>
	시 정	<p>일용인부가 각 부서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공무를 보조, 지원하는 이들의 사명감 자세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집무자세와 친절등을 정립시키는 동시에 처우개선등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함</p> <p>(이룡우 위원)</p>
	시 정	<p>예산편성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계상하여야 하고 엄정하게 재원포착, 사업의 타당성 심사, 투융자사업과 재정계획과 연계, 경제적·합리적 비용 계상을 통해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건전재정을 운용할 것</p> <p>(허명화 위원)</p>
	시 정	<p>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지방재정법 제77조) 하는데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의회제출 자료등의 계수검증이 되지않아 불신이 가중되므로 정확성이 요구됨</p> <p>(허명화 위원)</p>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공 통	건 의	공무원들이 담당업무가 미숙하고 소속계나 과의 업무내용을 파악 치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전화시 2-3명을 바꾸고 내방시 이 사람 저사람을 찾게됨)을 주고 있으므로 직무교육, 현장교육 (OJT) 을 철저히 시행할 것. (현 영 위원, 허명화 위원)
	건 의	주민복지의 균등한 배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구립시설물이 나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계획되고 모든 시 설은 예산편성전 기초조사, 보상,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 (최정구 위원, 허명화 위원)
문 화 공 보 실	시 정	현재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조”라고 표현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역사관과 각종 용어 사용이 부적당 하므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현 영 위원)
	개 선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구정을 올바르고 널리 통보하기 위하여 서초구소식(반상회보)을 우편으로 발송하 는 등 매가구에 빠짐없이 배부되도록 연구, 검토할 것 (유원규 위원)
	개 선	계획과 연계성 없이 유인물 통보 176회, 행사 87회를 통보함으 로써 예산낭비 내지 중복이 발생되고 있어 주간, 월간, 년간 구 정 통보종합계획을 수립, 구정전체적 차원에서 지속화 시키고 각종회의, 모임, 서초구소식 등을 통해 실행할 것 (김열호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문화 공보실	시 정	홍보지의 지질과 색상을 너무 고급화 내지 천연색으로 하지 말고 성격과 내용에 맞게 지질과 색상을 선택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것  (김열호 위원)
	건 의	구정홍보에 있어서 현 시대의 홍보매체로 등장한 컴퓨터 통신 홍보매체(천리안, 하이텔)를 도입할 것.  (김열호 위원)
	시 정	서초구소식(반상회보)에 의회활동 내용을 고정게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이며 사실위주로 편집하여 조례내용등을 게재 할 것  (도인수 위원)
	건 의	구정홍보는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없는 다수 주민의 의사를 굴절없이 수렴,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정홍보 방향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이룡우 위원)
	시 정	지역신문 구독에서 관내 2개 주간지중 특정지만 편중하지 말고 구독료가 지급되도록 하고 지역홍보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능동적으로 할 것  (이호혁 위원)
감사실	시 정	'95년은 예년에 비해 감사실적이 부진한데 공직사회가 정화되고 공무원의 의식이 개선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민선자치시대 출범을 위한 선거로 인해 직무 소홀이 아닌지, 주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기위해 지도감사는 지속되어야 할 것임.  (유원규 위원)
	건 의	감사요원의 인사권 독립으로 신분보장과 소신있는 활동추진이 보장되도록 할 것.  (허명화 위원)
시민 봉사실	개 선	행정정보공개실적이 저조한데 (공개대상 목록 3,556건중 4건 공개, 발급) 이는 주민들이 본 제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므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행정공개와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유원규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시 민 봉 사 실	건 의	1년간 수입증지 제작비 22,155천원, 판매수수료 27,795천원 등 47,950천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를 절약하기 위하여 "인증기" (서울의 타구에서 일부 사용중)를 사용할 것을 건의 (유원규 위원)
	개 선	전화신청 민원서류 발급에서 약 20%가 교부되지 않아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업무량이 많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므로 접수시 상대방 전화와 신원을 확인하는 등 교부율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도인수 위원)
총 무 국	건 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시민국" 을 "구민국" 으로, "시민봉사실" 을 "구민봉사실" 로 개칭할 것을 건의 (유원규 위원)
	개 선	비상용 공동정호의 중요성이 가려진 채 방치되고 있으므로 최신 기술로 처리하면 항상 양호한 수질을 보전할 수 있고 식수로 이용 가능하므로 유지 관리방법을 개선할 것 (유원규 위원)
시 정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96명)의 지급이 저조하여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김열호 위원)	
	처리요구	인력운영에서 정원보다 122명이 초과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는 26명이 부족 (파견 근무자는 제외) 하므로 기능직 43명, 고용직 192명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에 고용직 1명을 우선 배치 할 것 (김열호 위원, 최정규 위원)
시 정	통장자녀 학비보조(장학금)은 우리 조례에는 10%인데 15%(지침상)로 예산편성 하였으므로 지침과 예산이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 (김열호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총무국	시 정	예산편성시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거나 타당성 검토가 되지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이 재정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김열호 위원)
	개 선	고문변호사가 있으므로 조례, 규칙 등 제정이나 개폐시, 일상업무추진시 이들을 적극적으로 자문하여 활용하여야 하는데도 매월 고문료만 주고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함. (도인수 위원)
	시 정	7월이후 결원보충등 조직활성화가 되지않아 직원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약 4개월간 하수과장이 공석으로 있어 업무계획수립과 당면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할 것 (도인수 위원)
	개 선	구정업무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선발, 실시하는 산업시찰은 매년 같은 여행지와 내용으로 실시하므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보람과 뜻있는 2박3일간이 될 수 있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심신연마의 기회로 활용할 것 (도인수 위원)
	개 선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는 매번 같은 내용을 같은 장소에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주택가, 학교, 오염발생지등)하게 추진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참가자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수 있게 한가지씩의 환경상식이라도 가질수 있게 전문가를 초빙 5-10분정도의 환경강의를 실시할 것 (도인수 위원)
	건 의	토요전일 근무제는 민원인 편의 도모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양양과 재충전의 좋은 계기가 되므로 전부서에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음 (도인수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총무국	시 정	내곡동 부락 공동시설은 당초 총무국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복지 시설 건설을 이유로 시민국으로 이관, 뒤늦게 통합 추진함으로써 예산경정 등 절차가 복잡하였고 그만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이 과다 또는 중복투자 되었으며 그 책임소재도 불명확하게 되었으므로 부서간 업무협의 제도를 정착시킬 것 (도인수 위원)
	건 의	어려운 생활여건(경제적, 사회적등)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는 하위직 다수공무원들의 사기양양과 성취감 고취, 근무의욕 충족을 위해 승진, 전보를 보다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함 (이룡우 위원)
	건 의	동민체육대회 등 동별행사는 종래 구청단위 행사보다 주민화합과 동민 단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행사내용을 다양화시키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할 것 (최정규 위원)
	건 의	직원 고충상담 처리제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이를 활성화 시켜 근무의욕 고취와 직장분위기 쇄신에 활력을 주고 개인고충 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것 (이호혁 위원)
	건 의	청내에서 근무하는 전직원 명찰 패용을 건의 (허명화 위원)
	개 선	직원들의 다발적인 단기 해외시찰을 지양하고 3~6개월간의 교환 근무를 통해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집행으로 개선요구 (허명화 위원)
	시 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상반기 연동화시켜 예산편성전에 의회에 보고한 후 내무부에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행치 않았으며 내용에서도 지출실적난에 추정예산액이 표기되는등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보완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 (허명화 위원)
	시 정	내곡동 부락 공동시설 건립계획은 사전 철저한 타당성 심사가 되지 못하였고 의회가 삽감한 부분을 임의대로 전용집행 한 것을 지적함. (허명화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총 무 국	개 선	법정화 되어있는 정원보다 현원도 과다하게 관리 운용하는 것은 주인인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므로 지난해 54명의 차이보다 더욱 늘어난 것은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으므로 조속히 방안을 모색할 것  (허명화 위원)
	개 선	여권발급, 방범원, 병사, 버스전용차선단속, 저소득층보호등 국가 업무나 상급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받아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24조) 비용분석을 통한 심사분석을 하여 전액 보조금을 고부받도록 할 것과 수수료 교부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  (허명화 위원)
	시 정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27조) 구청사, 구민회관에 무상 입주한 단체에 대해 공정한 대책을 요구함.  (허명화 위원)
	건 의	지참, 무단이식, 근무자이탈, 무계결근 등 상습자는 철저히 단속하여 타직원에게 피해를 줄이고 업무미숙 등에 대하여는 자질향상을 위해 철저한 교육을 할 것  (허명화 위원)
	개 선	95년 편성된 신축 동청사 및 임시청사임대료 (방배본동, 방배2동) 5억은 세입 누락된 것을 지적하며 개선 요구  (허명화 위원)
	개 선	철저한 인력분석과 기구개편의 필요성 지적함. 적재적소 적정인원 배치요구  (허명화 위원)
	개 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예산의 첨부서류에, "12. 예산의 내용은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즉 계속비의 진행 상황과 투자심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하여 지적하며 개선 요구  (허명화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총 무 국	시 정	직원 휴양소 건립 토지매입비 집행계획에 토지를 매입치 못할 상황이면 콘도를 매입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 (허명화 위원)
	시 정	서초구청에서 작성하는 모든 자료에 작성일시, 기준일시, 작성자 등 계수의 차이가 발생치 않도록 책임있는 자료 요구 (허명화 위원)
재 무 국	시 정	'95년 과오납 반환금이 1,019,113천원으로 세원을 정확히 파악, 적법하게 부과처 아니하고 무책임한 부과로 조세행정의 불신과 구정을 비난하는 요인이 되고 납세자의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신 행정을 근절할 것 (유원규 위원)
	처리요구	세외수입은 징수의지가 적고 특히 실정법을 위반한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 (예 : 위반 건축물 과태료 19.1%, 민방위위반 22.2% 등) 한 것은 법질서확립과 행정공신력을 실추시키므로 강제 징수조치 할 것 (유원규 위원)
	처리요구	잠원동 소재 리버사이드호텔은 종합토지세등 38개 세목2,160,260 천원이 체납되어 있고 이를 경락받은 동림CJBR(주) 이 94.9.16 이후 취득세외 3건 2,128,296천원이 체납되었는데 현재 영업중 이므로 조속히 징수하여야 함. (유원규 위원)
	시 정	공사계약관련하여 제한적 최저 입찰제 실시로 낙찰율이 높고 (기계적으로 적용) 제출자료에 예정가격 157,938천원이 낙찰 각격은 158,730천원으로 낙찰율이 100.5%로 되는등 담당 공무원의 계수 검토 · 확인 의식이 적었음. (김열호 위원)
	처리요구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조직 및 기구)과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시행할 것 (김열호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러 의 견
재 무 국	개 선	물품취득시 개별구매보다 각 부서의 수요를 수합, 함께 구입하는 것이 업무량감소, 수송 편의, 예산절약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별구매를 지양할 것  (김열호 위원)
	건 의	토지과표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서초구민은 조세저항에 느끼고 있으며 그 예로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91년을 기준으로 할 때 92년 33%, 93년 62.4%, 94년 99.4%, 95년 122.4%나 신장, 증가 되고 있으므로 토지과표 조정을 신중히 할 것  (도인수 위원)
	시 정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44건은 징수율이 20.4%로 저조하므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부과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집행치 않은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완전 징수할 것  (도인수 위원)
	개 선	등지가심의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이 형식적이므로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하고 구단위의 위원회를 개편, 운영하여야 할 것임.  (도인수 위원)
	개 선	세외수입의 일부과목은 아직도 OCR 카드로 부과·납부되지 않는 등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실시할 것  (도인수 위원)
	건 의	96년도 우리구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한푼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서초구는 할일 다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제도의 불합리 내지 모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  (도인수 위원)
	시 정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바 포상금 지급을 그때그때 지급하여 징세업무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  (이룡우 위원)
	시 정	94년분 숨은 탈루세원을 125억원이나 추징한 것은 추적조사 등 좋은 사례이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므로 호적 및 주민등록 조회와 재산추적을 지속화시켜 체납을 근절할 것  (이룡우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재 무 국	개 선	체납액 94년 5,742,754천원에 1,409,940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4.1%, 95년 6,883,274천원 체납액중 1,775,121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5.7%)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시키거나 근절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 (이호혁 위원)
	개 선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누차 지적하였지만, 잉여자금의 적절한 활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은행에 단기성 예금 위주로 예치하여 이자증식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특정은행에 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세입징수, 지출개획을 연계시켜 장기예금위주로 자금운용을 할 것. (임한종 위원)
	시 정	'94년 결산에서 지출결산율 65.5%, 사고이월액 9,814,459천원이고 불용액은 30,928,07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6.1%이므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시켰다는 결론임. 만약 종합토지세의 세율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면 서초구의 '94년 집행현황으로는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 (허명화 위원)
	시 정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실적('95.10.31 현재)에서 1,077건 21,757,270천원중에서 수의계약이 836건으로 전체의 7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행정공개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 (정순임 위원)
	개 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 할 것. (허명화 위원)
	개 선	세입세출 총(순)계표의 추정액이 실제 결산 총(순)계표와 과다한 차액을 지적하며 근접한 수치가 추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파악 요구 (허명화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시민국	시정	도시가스시공업자들이 표준단가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횡포 가 심하여 주민피해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며 도로굴착과 복구상 태가 불량하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됨 (현영 위원)
	건의	도시가스관 시설보수에 있어 주택은 대지경계선까지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부담하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단지 경계선까지만 가스공급회사가 부담하므로 공동주택주민은 많은 보수비를 부담 하게 되어 원성이 많으므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유원규 위원)
	시정	계량기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 38개를 고발조치등 적극적 인 조치를 하지 않아 도량형기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이를 사용한 상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상불능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유원규 위원)
	건의	플라스틱 및 펫트병류가 재활용품으로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 환 경불결, 주민불편과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이 발로 밟아 압축시 키고 있으므로 압축기를 구매, 보급할 것을 건의 (유원규 위원)
	시정	위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부진(징수율 10%)하므로 부과 및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이해를 얻도록 할 것 (김열호 위원)
	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원중 '93,'94,'95년에 걸쳐 9·8억원만 융자, 지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현재 자금난이 심하므로 기금운용을 개선, 활성화 시킬것 (김열호 위원)
	처리요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조례상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 고 있으므로 조례를 조속히 개정, 시행할 것 (도인수 위원)
	시정	재활용품 수집센터를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아무근거 없이 '95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를 시정할 것 (도인수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시 민 국	처리요구	이웃돕기성금의 잔액보전과 적절한 활용을 위해 우리구 조례를 제정 할것을 요구함 (도인수 위원)
	건 의	서초여성회관 신축에서 1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는데 1층의 효용성을 감안, 주차장은 지하로 변경함이 요구됨 (도인수 위원)
	건 의	주부환경봉사단은 환경업무의 전문성, 통일성을 위해서 가정복지 과에서 환경과로 소관 변경함이 요구됨 (도인수 위원)
	처리요구	단란주점을 “문란주점”이라고 할 정도로 밀실설치, 미성년자출 입, 영업장 무단확장·변경, 접대부 고용 등 업태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는바 허가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것 (도인수 위원)
	시 정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정화조 청소안내서 내지 독촉장을 청소업자 에게 위탁 발송하면서 우송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 개선할 것 (도인수 위원)
	개 선	90년 12월 이전에는 주택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난립으로 식품점객업소등이 허가, 침투되고 있으 아에대한 대책이 요구됨 (유원규 위원)
	시 정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신축지가 강남구와 접경에 있으므로 다수 노 인들의 이용시 교통불편 등 문제가 많으므로 앞으로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 및 집회시설은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유원규 위원)
	시 정	규격봉투 구입으로 쓰레기 수거료를 지불하였는데 일부지역의 주택지와 상가지역에서 수거비 명목으로 별도로 요구(소위: “월정 금”) 하여 주민의 비난과 불평이 있으므로 철저히 교육, 지도할 것 (현 영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시 민 국	시 정	시중계량기 유통질서가 무질서하고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 불신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능 유류, 가스의 수요가 많아 단속이 요구되고 있음. (예: 등유의 경우 통상 20ℓ 들이가 통자체가 18ℓ로 만들어 졌고 실제량은 18ℓ 통에도 못다차게 배달, 거래되고 있음) (현 영 위원)
	시 정	도시가스지역 관리소의 숫자가 적어 가스안전점검의 소흘, 가스 공사 지도감독 부실,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 부재, 이사등으로 출장요구시 과다한 금품요구, 자재대의 과다 청구 등 횡포가 심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현 영 위원)
	건 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 종합복지관 건립이 98년 이후 주전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사회적 요구와 복지시설의 균형추진을 위해서 2-3년 정도 앞당겨 추진할 것 (김열호 위원)
	시 정	구정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웃돕기 기금 운영에서 전년도 잔액이 583,390천원 (8월보고)와 482,205천원 (11월보고)으로 상이하는 등 기금관리상 불신을 가져오고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의 숫자 검증없이 무책임하게 배포하는 사례를 지양할 것 (이효혁 위원)
	개 선	이웃돕기 성금은 보다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안정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면 이자수입으로도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것 (임한종 위원)
	시 정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714건 35,575천원을 부과했으나 징수가 부진한 것은 실적 위주 단속의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계도위주로 종량제 정착을 지도 할 것 (이효혁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시 민 국	시 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가 현실에 맞게 의회에서 개정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이유로 시행이 늦어져 결국 주민들만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 조치할 것  (임한종 위원)
	시 정	물가관리 업무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물가 지도단속 실적이 없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되고 인력관리 철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것  (임한종, 정순임 위원)
	시 정	품질표시대상업소 1,14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전무하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권익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  (정순임 위원)
	시 정	세출을 세입과 연계시키지 않고 세입은 세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적기 고지가 되지 않는 등 (예, 예비비로 집행한 '94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 누락 지적) 예산 회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됨.  (허명화 위원)
	건 의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가격의 적정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적정가격을 산정, 제시할 것.  (도인수, 허명화 위원)
	건 의	쓰레기 수거 체제의 변경과 모든 동을 대행업체에 위탁 시킴에 따라 청소행정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인력, 장비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대행업체의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실이 있으면 교체하는 등 대행업체도 경쟁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요구됨.  (허명화 위원)
	시 정	고속발효기 구입은 줄속 시행한 것을 지적하며 기기나 장비구입은 충분한 시험검사 등 검증과 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  (허명화 위원)
	시 정	방배2동 제2구립 노인정 토지매입비를 전용 집행한 것은 부당함  (허명화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동사무소	시 정	동에도 기술직을 배치, 하수, 토목 등 건설분야 업무를 맡겨야 하는데도 장기 공석으로 조속히 총원되어야 함. (유원규 위원)
	개 선	아파트지역보다 단독주택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대한 원인과 대책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요구됨. (정순임 위원)
	건 의	각종 고지서등의 송달로 인하여 동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우편송달 등 제도개선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요구됨. (허 원 위원)
	개 선	동사무소의 청부(미화원)의 폐지로 일손이 부족한 동의 청사유지 와 청결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총원할 필요가 있음. (안용준 위원)
	건 의	'95.12월에 준공된 서초1동 청사는 장마시 누수로 인하여 바닥 손상 및 건물의 초기 노후화가 촉진되어 보수가 요구됨. (김열호 위원)
	건 의	서초2동사무소 감사시 부녀회장 등 직능단체장 4명이 배석하여 구동업무에 대한 의회감사의 실상을 알리고 의회에 대한 주민의 견 청취와 의회역할에 대한 홍보등 주민과 한층 밀착된 자치행정 을 한다고 보아 앞으로 전파시킬것을 건의함. (도인수, 허명화 위원)
	건 의	통계에 의하면 ○ ○ 동의 경우 통장 39명중 근무년수별로 보면 10년이상 4명(10%) 6~10년을 7명 (18%), 4~6년은 9명 (23%) 등 6년이상 장기근무자가 28%나 되어 장점도 있으나 장기근무로 주민과의 접촉기피, 타성적인 업무추진이 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한 임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여자 통장이 26명(66.6%)이나 되어 민방위 통대장임을 감안 가급적 남자 통장으로 교체할 것 (이룡우 위원)

소관분야	구 분	처 리 의 견
동사무소	건 의	최말단 행정기관서로서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을 추진, 전파하는 동직원의 막중한 임무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결원이 많아 업무가 많으므로 처우개선과 결원충원 요구됨. (권금택 위원)
	건 의	각동 청소년 선도위원회 산하에 "청소년 봉사단" 을 설치하여 청소년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출소와 동사무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청소년들이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마음,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임. (천승수 위원)
	시 정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살피는 동사무소는 주민생활 안전의 최첨병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구의 각 실과에서 지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을 검토없이 이첩하는 등 지시 일변도의 행정을 지양 할 것. (천승수 위원)
	개 선	서초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있으나 주민이 선택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 (허명화 위원)
	건 의	서초2동 상습침수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서초 구청에 건의 (허명화 위원)
	건 의	도농자매결연을 활성화시켜 농산물 직거래가 실제로 이루워지도 른 노력할 것 (허명화 위원)
	시 정	서초구청행사나 동행사에 주민동원은 지양하고 자율참여를 유도 할 것. (허명화 위원)